

< 예시 6 > 회원(조합)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을 받은 경우

| 구 분   | 직 위    | 성 명 | 연락처    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책 임 자 | 신용상무   | 서종식 | 02-2600-0204 |
| 작 성 자 | 상호금융팀장 | 이영상 | 02-2600-0236 |

## 경 영 (수시) 공 시

본 수협은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83조의2,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 및 「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### 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 :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45조제4호)

### 2. 공시대상

- 대 상 :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
- 사유발생일자 : 2022.03.04 ~ 2022.04.08
- 경 위 : 고양시 식사동 일대의 다세대 빌라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타 상호금융기관 감사 시 실거래가격과 다른 분양가격을 근거로 대출이 취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지역에 취급된 수협의 대출건에 대해서 대출의 적정성 등 점검 요청이 있어 점검.
- 주 요 내 용 : 해당 대출 담보물에 대하여 재감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- 수지에 미치는 영향: 만기도래시 재감정을 통한 원금일부 상환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장 (직인)

